

제2차 편익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(안)

(2005년 ~ 2009년)

2005. 4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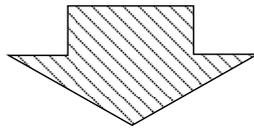
편 의 증 진 심 의 회
관계부처 합동

목 차

I. 추진배경	1
II. 제1차 5개년계획('00~'04년) 추진실적 및 종합평가	2
□ 제1차 계획의 기본 방향	
□ 주요 추진성과	
□ 분야별 추진실적	
□ 종합 평가	
III. 제2차 편이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('05~'09년)	8
□ 제2차 계획의 기본방향	
□ 추진체계	
□ 국가종합 추진과제	
□ 평가지표	
<별첨 1> 중앙행정기관별 편이증진 5개년 계획(요약)	21
<별첨 2> 지방자치단체별 편이증진 5개년 계획(요약)	37
<별첨 3> 대상시설별 편이시설 설치현황 및 목표	44

< 「제1차 편의시설 설치 국가종합 5개년계획」 종합평가 >

- 생활·교통환경 개선 등 편의시설 설치 중심의 정책 추진
 - 설치율 : '98년 47.4 % → 2003년 75.8 %
 - 장애인의 편의증진 체감도가 설치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
 - 하드웨어인 시설설치 중심에서 소프트웨어·휴먼웨어 중심의 편의증진 정책 필요



< 「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」 주요 변화 >

□ 사회인식 개선에 중점

- 편의'시설' 중심의 1차 종합계획을 보완하여 시설 설치율에 맞는 사회 전반의 편의증진정책에 대한 인식 제고

□ 편의증진 체감도 향상에 중점

- 시설 설치를 넘어서는 종합적인 편의증진 정책(人的 서비스제공 등)을 통해 시설이용가능성, 안전성 제고 등 장애인들의 편의증진 체감도 향상
- 시·청각장애 등 장애유형과 성인지적(임산부·여성장애인)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발 등 현행 법·제도상 부족한 부분의 지속적 보완

□ 추진체계의 자율성 및 상호협력에 중점

- 편의증진정책은 시설주관기관이 자율적 설치계획(붙임자료 참고)에 기반하여 시설주관기관 책임하에 추진
- 보건복지부는 편의증진심의회를 통해 조정·평가

□ 종합계획 상시 평가

- 편의증진실태 전수조사 : 2008년 실시
- 편의증진 실태 평가·조사 연구 : 2005년 및 2010년 실시

I. 추진배경

□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」(’98.4.1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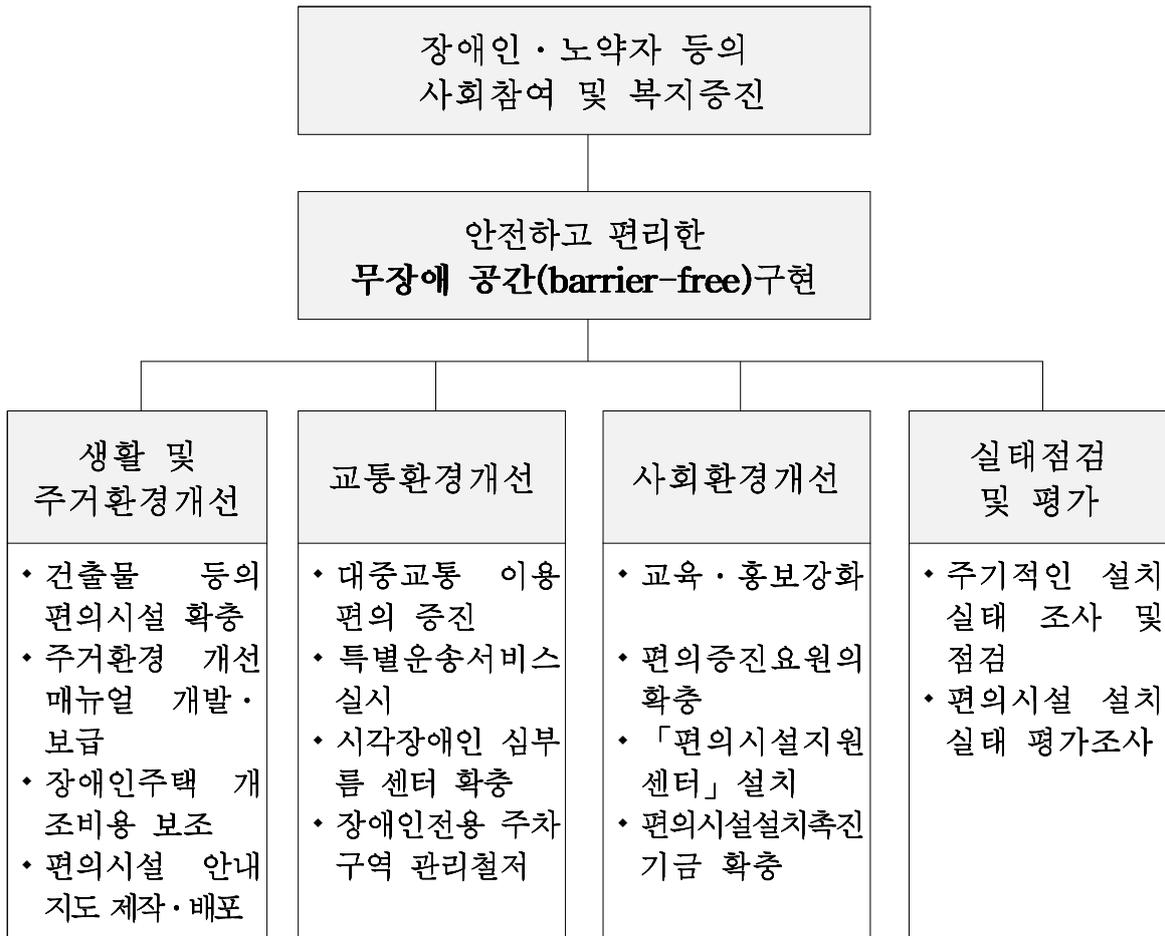
- 법시행 이후 신축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, 도로, 공원,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
- 매년 편의시설 실태조사 실시(5년마다 전수조사 실시)
 - 조사결과, 미설치 및 부적정 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
- 체계적인 편의 증진정책 추진을 위해 시설주관기관(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)은 5년마다 편의시설설치계획 수립·시행
 - 국가는 시설주관기관의 계획을 토대로 편의시설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국가종합계획 수립·시행

□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계획(’03~’07)

-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관련 전문성 제고
 - 건축사 예비시험에 편의증진법령 포함, 편의시설 관계 민간자격 도입 검토 등
- 시·청각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 증진
 - 한국수화규범 표준화 사업 지속 추진 등

Ⅱ. 제1차 5개년계획('00~'04년) 추진실적 및 종합평가

□ 제1차 계획의 기본 방향



□ 주요 추진성과

○ 편의증진 정책 추진체계 구성

- 관련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**편의증진 심의회** 설치
 - ※ 편의증진 심의회는 보건복지부(위원장 : 차관)에 설치되며, 14개 관련 부처 2~3급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(장애인 2분의 1이상)로 구성됨
- 편의시설 지원센터, 편의시설 홈페이지 등 지원체계 구축
 - ※ 현재 16개 시·도 편의시설지원센터 및 1개 중앙 편의시설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장애인복지진흥회에 편의시설 홈페이지 운영 위탁

○ 편의증진법 개정 등 제도개선

-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」 개정(2003.12.31.)과 동법 시행령 개정(2004. 6. 29.)으로 의원, 이·미용원 등 주요 근린생활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
- 건설교통부 「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」 제정(2005. 1. 27.)

○ 편의시설 설치실태 개선

- '03년 공공시설, 도로 등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 '98년과 비교해 설치율 **28.4% 증가**

대상시설별	'98년 조사결과('98.12.31.기준)			'03년 조사결과('03.4.11.기준)		
	설치대상수 (A)	실제설치수 (B)	평균설치율 (B/A)	설치대상수 (a)	실제설치수 (b)	평균설치율 (b/a)
계	667,471	316,614	47.4%	877,257	665,293	75.8%
○ 도로	105,414	55,343	52.4%	185,619	165,290	89.0%
○ 공동주택	47,490	28,992	61.0%	138,533	91,484	66.0%
○ 공중이용시설등	501,758	227,910	45.4%	538,453	399,854	74.3%
○ 공 원	12,809	4,369	34.1%	14,652	8,665	59.1%

※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율 : 별첨 3

- 철도·고속철도·지하철 역사 814개를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('04.6월 현재) 결과 설치율 **72.3%**

□ 분야별 추진실적

1. 생활 및 주거환경 개선

- 건축물등의 편의시설 확충, 장애인주택 개조비용 보조 등 주거 환경개선

<p>편의 시설 확충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편의시설 설치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체 대상시설(전수조사 결과) : 47.4%('98년)→ 75.8%('03년)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청사, 횡단보도, 장애인복지시설, 종합병원 등 정비대상시설 : '00년 74.7% → '01년말 : 98.6%
<p>주거 환경 개선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거환경 개선 매뉴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체, 시각, 청각 등 장애유형별 주거환경개선 매뉴얼 개발보급 (1,000부, 2000년) ○ 주택개조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울시 : '01-'02년 각 5세대(각 20백만원), '03년 30세대(150백만원) - 보건복지부 : '04년 복권기금 71억원으로 약 4,500세대 주택개조 지원 추진(세대당 320만원, 국고·지방비 각 50%)
<p>제도 개선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편의증진법 시행령을 개정('04.6.29.)하여 '05.7.1.부터 의원·치과 의원·한의원·이용원·미용원·교정시설 등을 대상시설 포함 ○ 민간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유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04년 조세특례제한법령을 개정하여 조세감면 적용대상 편의시설의 종류를 확대(15종→21종)하고 감면비율을 상향조정(3%→7%) ○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축건물의 사용승인단계에서 편의시설 점검을 강화하도록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제안('04년 하반기중)

2. 교통환경 개선

-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, 장애인 특별운송서비스 실시,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철저

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철도·지하철역사 승강설비 설치현황 : 82.3%(‘04.6월 현재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철도 : 60개 역사(2층이상)중에서 38개 역사에 엘리베이터 54대, 휠체어리프트 83대 설치 - 지하철 : 511개 역사(2층이상)중에서 425개 역사에 엘리베이터 515대, 휠체어리프트 1,149대 설치 ※ 편의증진법 시행령에 의거 철도·지하철역사는 법시행후 7년 이내 (2005.4.10.)에 편의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. ○ 일반노선버스에 저상버스 도입(건설교통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자체에 국고를 보조하여 60대 시범도입 추진(‘04년 30억원) ○ 음향신호기(경찰청) : ‘00년 9,849대 → ‘02년 11,514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04년 음향신호기 규격 개선 추진중(동시작동 문제 등 개선)
장애인 특별 운송 서비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특별운송서비스(‘04년 3월 현재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휠체어리프트 장착차량(복지부) : 15개 시·도 26대 - 셔틀버스 56대, 콜택시 183대 등(지자체) ○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각장애인의 출·퇴근보조 등 지원 - ‘00년 16개소 → ‘04년 51개소 200대 운영
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차단속 지속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‘00년 1,525건 → ‘01년 2,017건 → ‘02년 3,242건 → ‘03년 3,533건 ○ 주차구역 관리강화(편의증진법 개정, ‘03.12.31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 한하여 전용주차구역 주차허용 ○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차장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설치율 확대(1~3% → 2~4% 범위) - 편의증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아파트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
제도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정(건설교통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애인등의 이동편의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제정

3. 사회환경 개선

○ 교육·홍보강화, 편의증진요원 확충, 편의시설 지원센터 설치

교육 · 홍보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편의시설 TV방송홍보(2001년) 등 수시 언론매체 방송(장애인먼저, 각 장애인단체 등) 활용 등 홍보 ○ 편의시설 홈페이지 운영(2001년~) ○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제작·배포(1,000부, 2002년) ○ 편의시설설치시민축진단 구성·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·도 및 시·군·구별 축진단요원을 위촉하여 편의시설 홍보 및 설치실태 점검 등 실시(16개 시·도 1,400여명)
편의증진 요원확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하철 역사내 승강장 등에 공익근무요원 배치(2000년~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03년 서울지하철공사 1,057명, 도시철도공사 1,390명 등
편의시설 지원센터 설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편의시설지원센터(전국 17개소) 운영지원(2004년~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앙센터(5명) 1개소, 지방센터(3명) 16개소 - 편의시설 설치상담, 기술지원, 실태조사, 조사연구 등
제도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화통역 등 인적(人的)서비스 제공의 근거조항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편의증진법을 개정('03.12.31.)하여 공공건물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수화통역·안내서비스 등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.

4. 실태점검 및 평가

○ 주기적인 설치실태 조사 및 점검, 편의시설 실태 평가조사

주기적 실태조사 및 점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수조사(5년 주기, 복지부·지자체 합동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998년 : 설치율 47.4% - 2003년 : 설치율 75.8% ○ 정비대상시설에 대한 실태조사(복지부·지자체 합동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청사 등 공공건물 실태조사 : 2000년 74.7%, 2001년 98.6% - 지하철·철도역사 : 2004년 72.3%
편의시설 실태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편의시설 설치실태 평가조사(2000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편의시설의 설치실태 평가(적정성, 안전성 등)

□ 종합 평가

- 1차 5개년 계획을 통해 편의증진 추진체계의 구축, 편의시설 설치 증진 등 성과가 있었으나, 아래와 같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

1) 장애인의 편의 증진 체감도(體感度) 저조

- 설치된 편의시설 중 법적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경우가 있고 신축건물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한 사례 발생
- 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중 대상시설에서 제외되어 있는 시설이 있어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초래
 - ※ 장애인 8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('03년 4~5월)한 결과, 지체장애인(527명)의 58.7%, 시각장애인(160명)의 70.0%, 청각장애인(178명)의 86.8%가 시설이용의 불편 호소
- 단편적인 시설 설치를 넘어서는 종합적인 편의증진(人的서비스의 제공 등) 부족

2) 편의시설에 대한 낮은 사회 인식

- 장애인 편의증진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 인식이 낮아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 소극적이며 형식적 설치에 그치는 경우 발생
- 민간 시설주는 설치의무를 비용부담으로 인식하여 규제회피적 행태를 보임.

3) 시설주관기관(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)의 적극적 참여 필요

- 교육인적자원부,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의 소관 편의시설(학교 시설, 문화·체육시설)에 대한 적극적 편의증진 노력 필요
-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허가 시 편의시설 점검, 미설치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등 자율적인 지도·감독 강화

IV.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('05~'09년)

□ 제2차 계획의 기본방향

장애물 없는(Barrier-free) 사회 실현을 통한
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

- 공공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
-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
- 생활공간의 주거 및 이동편의시설 확충
- 지속적 실태점검 및 평가
- 편의증진심의회를 통한 지속적인 제도개선

공공시설 접근성 제고	사회인식 개선 및 교육강화	생활공간의 편의시설 확충	실태점검 및 평가	제도개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공공시설의 편의증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적서비스 제공 확대 ○ 중앙행정기관별 소관 편의시설 지도·감독 강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편의증진 대 국민 홍보강화 ○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교육 확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근린생활시설 및 주거공간의 편의시설확충 ○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확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도별 실태조사 계획 수립 ○ 전문가 및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설치실태 평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편의증진심의회를 통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제안 및 이해당사자간 합의 도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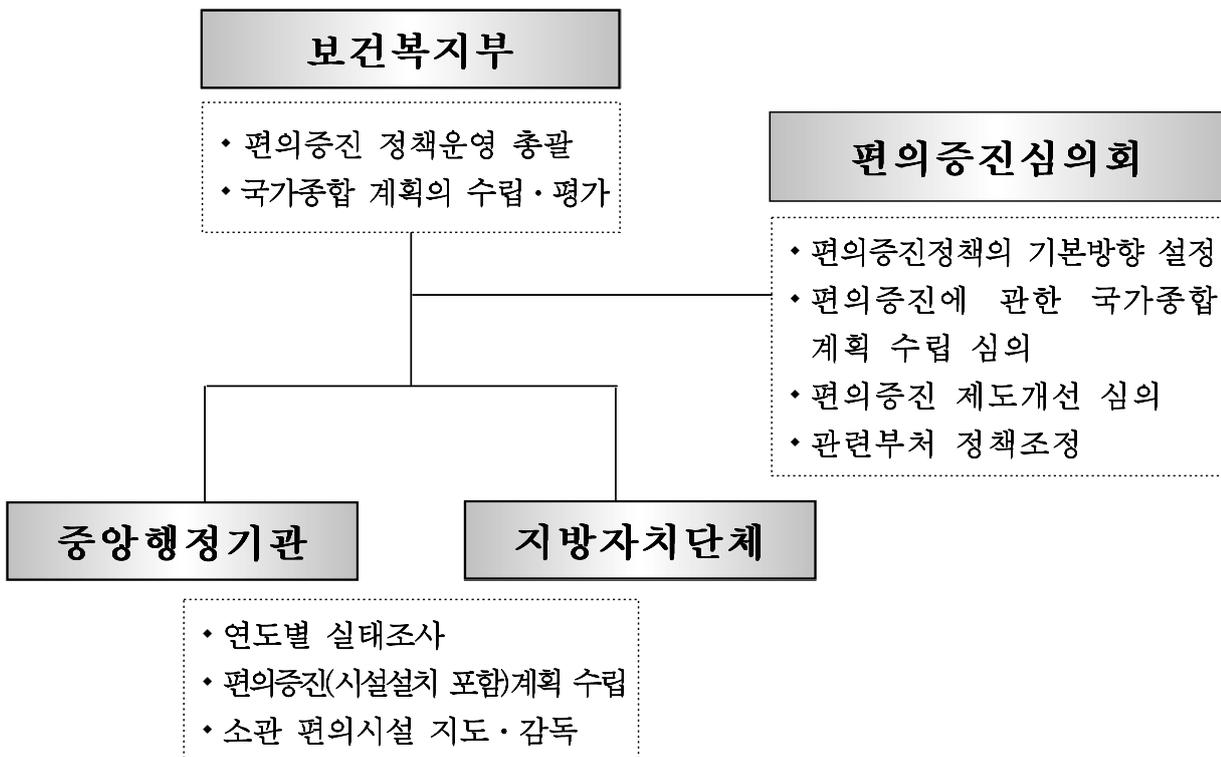
□ 추진방향

- 장애인화장실(남·여 구분 등), 승강설비 등 편의시설 설치를 내실화하고 수화통역·이동보조 등 인적(人的)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하여
 - 공공시설의 장애인 접근성(接近性) 제고
- 일반국민들이 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 및 편의증진이라는 차원을 넘어 보편적 설계(**universal design**)의 관점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강화
 - 대국민 인식개선 및 실무자 교육
-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의원, 한의원, 이·미용원 등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 등 주거시설의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장애인이 느끼는 편의시설의 설치 체감도(體感度) 제고
- 정기적으로 편의증진 실태(전수, 표본)조사 및 실태 평가·조사연구구를 실시하고 조사·연구 과정에 전문가와 함께 장애인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편의시설의 적정설치 유도 및 편의증진 활성화
 - 매년 편의시설 표본 조사 및 5년 주기의 전수조사 실시
 - 장애인과 관련 전문가가 공동참여하는 실태 평가·조사연구 실시

□ 추진체계

- 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편의증진정책 추진을 위한 편의증진 심의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 운영 활성화
 - 편의증진심의회는 법이 정한 관련부처 2~3급 공무원 및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민간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여 편의증진정책 총괄
 - 건설교통부의 「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」, 정보통신부의 「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」, 지방자치단체별 편의증진 조례 등 정책 조정
- 시설주관기관(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)은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에 따라 기 제출한 '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'을 자체 수정하고 장애인 편의증진 정책 집행 및 실태조사 등 실시
 - <별첨 3>의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조치

< 범 정부 편의증진 추진체계 >



□ 국가종합 추진과제

1	공공시설 접근성 제고
---	-------------

1. 인적(人的)서비스 제공을 통한 종합적 편의증진 추진

- 인적 서비스를 통해 단편적인 편의시설 설치를 넘어서는 편의제공
 - 장애 유형에 맞는 인적 서비스 제공
 - 이동보조안내원(시각·지체장애인) 수화통역서비스(청각장애인)
 - 공공청사 인적 서비스 창구 정비(기존 안내데스크 활용 포함)
 - 인적 서비스와 이용기구등이 방치되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되도록 정비
- 인적서비스 제공·활용계획 수립
 - 인력 공급, 효율적 활용 등에 관한 현황 파악 및 대안 마련 추진
 - 인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 등 관련부처 협의 추진

2.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내실화

- 공공시설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확충 및 상호 연계 강화
 - 공공건물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, 장애인 화장실(남·여 구분), 경사로 등 편의시설 확충
 -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확보비율 상향 조정 및 위반차량 단속강화
 - ※ 2003. 5. 주차장법시행령 개정(부설주차장의 경우 의무확보비율을 1~3%에서 2~4%로 상향조정)
 - 이미 설치된 편의시설의 지속적 사후관리
 - 파손시설, 노후시설의 지속적인 보완·교체
 - 부적절하게 설치된 시설에 대한 시정조치
 - 편의시설 상호간의 연계성 강화
 - 전용주차구역과 출입구간의 안전 접근로 확보
 - 설치된 편의시설의 연계강화를 위해 설치시설간 최단거리 원칙(편의증진법 제3조)과 안전이동로 확보를 합리적으로 절충

3. 중앙행정기관별 소관 시설 편의증진 지도·감독 강화

- 각 중앙행정기관별 소관 시설 편의증진 정책에 대한 지도·감독 및 부처간 연계 강화
 - 각 중앙행정기관별 자체 지도·감독 점검반 운영
 - 장애인당사자가 포함된 전문가 단체 등과 연계하여 년 1회 이상 점검추진
 - 편의증진심의회를 통한 부처간 역할 분담 및 상호협력

< 중앙행정기관별 소관시설 >

- 교육인적자원부 : 초·중·고교 및 대학교
- 법무부 : 교정시설(교도소 등)
- 행정자치부 : 국가청사(중앙청사, 과천청사, 대전청사, 춘천지소)
- 문화관광부 : 공연장(극장 등)·전시장(박물관, 미술관 등)
- 정보통신부 :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공중전화 및 우체통
 -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
- 노동부 : 장애인고용사업장
- 건설교통부 : 공동주택, 교통시설, 교통수단, 도로 등
 -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
- 해양수산부 :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(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) 및 종합여객시설
- 경찰청 : 경찰서·파출소, 횡단보도 음향신호기

※ 부처별 제2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은 <별첨 1> 참조

4. 지방자치단체별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상의 관련 국가종합 추진과제 시행계획 수립·추진

-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 국가종합 추진과제에 대한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<별첨 2>과 함께 추진함으로써 장애인편의증진 체감도 증진

1. 사회 인식 개선

○ 보편적 설계(universal design)로서의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

-
- ※ 보편적 설계란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진 사용자가 어떠한 환경 조건에서도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것
 - 따라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은 장애인 등도 자유롭게 사회참여가 가능하고 비장애인은 더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
-

○ 편의증진 홍보 확대

- 편의시설 설치 인증제도 도입 추진
 - 편의시설 설치 모범시설물 선정 및 인증제도 도입, 우수 인증 시설에 대한 홍보·견학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연구추진
-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의한 시설주, 시공사업자 대상 홍보, 상담 및 기술지원 강화
- 언론, 방송 및 복지부 홈페이지와 편의시설 홈페이지(www.cofad.or.kr)를 통한 지속적 홍보 실시
- 편의시설 관련 대국민 홍보자료 등 제작 배포

2. 교육 강화

○ 지방자치단체 편의시설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강화

-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등 전문기관에 의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·실시
-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보급 추진
 - 보급대상: 편의시설 주관기관(부서) 및 관련기관 등

1. 근린생활시설 등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이행홍보·지원

-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설치대상 확대(2005.7.1. 시행)
 - 근린생활시설인 의원·치과의원·한의원, 이용원·미용원 등에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
 - 공동주택(아파트) 부설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화
- 지역내 편의시설 안내지도 등 제작·배포
 - 지역내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편의시설 설치 상황 및 인적서비스 제공 상황에 대한 안내지도 제작·배포
- 근린생활시설에 편의시설 설치 지원 확대
 - 근린생활시설에 편의시설 설치시 재정적 지원 확대 등 관련 부처 협의 추진

2. 주거공간의 편의시설 설치 확대

- 장애인들의 안락한 주거생활 위한 주거공간의 편의시설 확충
 - 국민임대주택 분양시 문턱제거, 욕실바닥 미끄럼 방지타일, 좌식 싱크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의 주거만족도 제고
 - 주택의 영구적 개조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변형 편의시설 보급 확대
 - 탈 부착형 편의시설 등 가변형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제공

3. 생활공간의 이동 편의증진

○ 철도·지하철 역사의 편의시설 완비

- 편의증진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해 7년간 정비대상이었던 철도·지하철 역사가 정비기한 만료(2005. 4. 10)
- '05년 하반기에 철도·지하철 역사에 대한 편의증진 실태조사 예정
- ※ '04년 실태조사 결과 72.3%의 설치율

○ 특별교통수단 제공

-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으로 셔틀버스 및 콜택시 운영을 확대·내실화 하여 중증장애인에게 door-to-door 서비스 제공
- ※ '05년 강원·충남·전남·경북·제주 등 5개 자치단체에 총 75,000천원 국고보조예정(리프트장착차량 5대 구입비)
- 자치단체별 특별교통수단 확대 추진
- ※ 이동편의증진과 관련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「교통약자의이동편의 증진법」에 의해 중점 추진

○ 대중교통시설 관련 편의시설 홍보·안내 확대

- 대중교통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 편의시설 설치 위치 홍보 및 이용대상자 관련 안내 확대
- ※ 지하철 역사 등에 장애인용 승강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안내 부족(유모차나 무거운 짐을 든 비장애인은 이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해)등으로 인하여 시설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례 방지

4 실태조사 및 평가 강화

1. 시설주관기관에 의한 편의증진 실태조사 강화

- 시설주관기관은 매년 편의증진 실태조사 실시
 -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편의시설의 적정·부적정·미설치 및 인적서비스 제공여부 등의 편의증진 실태 표본조사(시설별 조사 포함) 실시(편의증진법 제11조)
 - ※ 당해년도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
 - 5년마다 편의증진 실태 전수조사 실시(2008. 4.)
 - 실태조사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지도 실시
- 실태조사의 전문성 확보
 - 설치율 위주의 조사를 벗어나 이용가능성·안전성·연계성 등이 반영된 편의증진 체감도에 대한 실질적 평가가 될 수 있는 조사내용 마련
 - 실태조사 시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
 - 실태조사요원 대상 편의증진법·편의시설표준도 등에 대한 교육강화

2. 국가에 의한 편의증진실태조사 강화

- 편의증진 실태 평가·조사 연구실시(2005년)
 - 편의증진 관련 장애인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시설주관기관별 편의증진 실태 평가·조사 연구실시 및 결과 공표
 - ※ 2000년에 1차 편의시설 설치실태 평가조사 연구 실시
- 「정부업무등의 평가에관한기본법」 제6조에 의한 자치단체 평가시 반영
 - ※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편의증진 관련 평가항목 삽입을 위한 연구 추진

1. 장애인·노인 관련 편의증진법령 개선

○ 시각·청각 장애인의 안내·경보시설 관련 제도 개선

- 현재 교통신호기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·안내설비의 의무화 검토
 - 점자안내판, 촉지도식 안내판, 음성 안내장치(시각장애인), 전자문자안내판(청각장애인) 등

○ 승강설비관련 규정 개선 추진

- 교통시설 등에 승강설비 설치에 있어서 승강기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승강기 설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등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도록 법령 개선 추진

○ 주요 민원제기 대상 제도에 대한 관련규정 개선

- 점자블록의 규격, 장애인전용주차구역(현행 보행상 장애여부에 따른 주차허용 구분제도) 등

2. 임산부 관련 편의증진법령 개선

○ 임산부에 대한 편의증진 정책 확대

- 현재 편의증진법상 임산부(혹은 여성장애인) 관련 규정 미흡
 - 임산부·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편의증진법령 개정추진
 - 특히 민원제기가 많은 장애인용 화장실 남녀구분설치 명확화와 공공시설 내 임산부·여성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(수유시설 등) 설치 등 관련 제도개선 추진

3. 관련법률 개선 추진

○ 건축법령 개정 협의 추진

- 건축법상 감리보고서,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기재하도록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 별지 서식 개정 요청

○ 건축사법령 개정 협의 추진

- 건축사, 건축사보 등 건축실무자에 대한 편의시설 교육 강화 및 건축관련 자격시험에 장애인 편의시설 분야 포함 추진

○ 건설교통부 「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」 시행령·시행규칙 제정추진

- 점자블록, 인도 등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정비
- 보행-대중교통수단-특별교통수단-교통정보제공 등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종합적인 정책 반영

4. 편의증진심의회 운영 활성화

○ 편의증진심의회를 통한 이해관계자간 협력 강화

- 편의증진심의회 정기적 개최를 통해 편의시설 관련 전문가와 장애인당사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편의증진법령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 제·개정, 제도개선 제안 등 협력
- 편의증진심의회 효율적 운영 및 대표성 제고(여성·노인)를 위한 편의증진심의회 운영세칙 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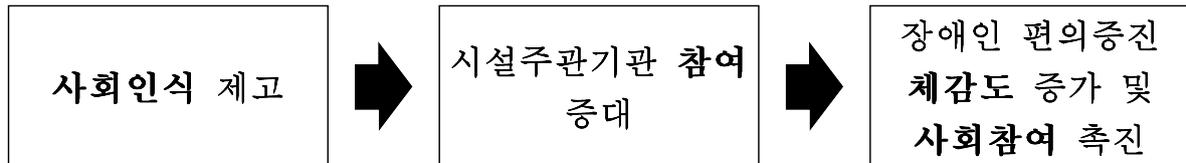
※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」 시행규칙 개정 추진(05)

- 동 시행규칙의 내용 중 장애인용화장실大便기의 측면 공간 확보 등 일부 설치기준의 미비점 개선·보완 및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자구수정

□ 평가지표

1. 목적

- 「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」의 집행 실적 및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장애인들의 편의증진 체감도 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



2. 평가지표 및 조사방법

○ 평가지표

- 사회인식

- 비장애인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편의증진 시설 이해도, 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 편의증진 정책에 대한 태도 조사

- 시설주관기관의 참여율

- 자치단체별 시정명령률($\frac{\text{시정명령수}}{\text{미설치, 부적정설치시설수}}$)
- 자치단체별 편의시설 설치율 증감, 편의증진 담당자 교육 회수 등

- 장애인 편의증진 체감도(體感度) 및 사회참여율

- 장애인을 대상으로 편의증진 체감도, 시설의 이용가능성 · 안전성 · 연계성 등

※ 상기 평가지표는 향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가능

○ 조사방법

- 2005년, 2010년 「장애인편의증진 실태 평가·조사연구」시 포함

3. 목표 및 평가활용

○ 2010년 목표

- 목표는 2005년 실시예정인 「장애인편의증진 실태(편의시설 설치실태 포함)평가·조사 연구」 결과를 반영하여 2006년 상반기에 편의증진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결정
- 평가지표별 세부목표

평가지표	2003	2005	2010
사회인식 제고	-		
시설주관기관의 참여	-		
편의증진 체감도	33.2% ¹⁾		
사회참여율	-		

1) '03년 4~5월에 장애인 대상 편의시설 관련 설문조사 실시 결과

○ 평가활용

-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실행 담보

<별첨 1>

중앙행정기관별 제2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

(요약)

- 교육인적자원부
- 행정자치부
- 문화관광부
- 정보통신부
- 노동부
- 건설교통부
- 해양수산부

□ 교육인적자원부

1. 목 표

- 유·초·중·고등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·설비 확충을 통해 장애 학생의 이동권 보장 및 통합교육 기반 구축
- 대학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, 교수·학습지원 등 대학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통한 장애인의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 확대

2. 추진과제

- 특수학급 설치학교부터 단계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학생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
- 장애학생의 장애 특성에 따른 교수-학습 지원체제 구축

3. 연차별 추진계획

가. 유·초·중·고등학교

- 특수학급 설치학교는 시·도교육청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 토록 하고
 - 설치현황을 시·도교육청 평가사항으로 반영 추진
 - 2006년 농산어촌 지역 특수학급 설치학교에 편의시설 설치 지원 계획 수립 추진
- ※ 연도별 추진목표(설치율) : 51%(2004년) → 70%(2005년) → 100%(2006년)
- 특수학급 미설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추진계획
 - 2007년부터 초등학교부터 2011년까지 5개년간 추진

나. 대학

- 장애 대학생의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확충
 - 신설대학의 경우 설계단계에서 모든 건물에 설치 의무화
 - 기존대학의 경우에는 단계적인 편의시설 확충 도모
 - 국립대학의 경우 시설 투자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조치
 - 사립대학에 대하여는 평가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한 자구노력 유도
 - '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' 개발·보급
- 장애학생의 장애 특성에 따른 교수-학습 지원체제 구축
 - 도우미 지원, 교수·학습기자재 보급, 학점등록제 시행 등 다양한 교수·학습 지원 서비스
 - '대학 장애학생 교수·학습지원 매뉴얼' 등 개발·보급
- 대학의 교수·학습지원 및 편의시설 확충 유도를 위한 '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' 실시
 - 2005년도 4년제 대학 중심 평가 후 3년단위 실시
 - 각종 대학평가사업 평가항목에 '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현황' 반영

4. 소요예산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	연도	2005	2006	2007	2008	2009
유·초·중· 고 학	특수학급 설치학교	금액	45,400	71,600	-	-	-
		규모	639교	1,008교	-	-	-
	특수학급 미설치학교	금액	-	-	71,100	71,100	71,100
		규모	-	-	1,000교	1,000교	1,000교
계			45,400	71,600	71,100	71,100	71,100

※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총당 예정

□ 행정자치부

1. 대 상

- 정부청사(중앙 · 과천 · 대전청사 및 춘천지소)

2. 관련법령

- 장애인 · 노인 ·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2조
(시설계획의 수립 · 시행 및 보고)

-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대상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· 시행하여야 한다.

- 장애인 · 노인 ·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
(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)

-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3. 설치실태

- 법적의무시설 7개항목 설치 완료

- 주출입구 접근로 30개소, 장애인주차장 95면, 승강기 14대, 화장실 24개소, 점자블럭 2,845, 축지도 11개, 경보 및 피난 설비 875개, 접수대 11개소, 휠체어 12대 등

4. 추진계획

○ 목 표

- 정부청사 내의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보수, 확충을 통한 공공청사 내의 장애인 활동편의 증진

○ 추진과제

- 장애인 관련 법률에 따른 의무설치 시설은 제1차 편의시설 확충 5개년 계획에 의거 완료되었음
- 완료된 각종 장애인 편의 시설물에 대하여 수화 통역 등 인적 서비스를 포함한 지속적 점검·보수 및 배치 등의 유지관리를 통한 장애인이 활동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는 공공청사의 환경 조성 추진

○ 정부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추진계획(전 체)

(금액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총 계	추진계획					비 고
		2005년	2006년	2007년	2008년	2009년	
총 계	571.5	17	104.5	153	158	139	
○ 장애인 주차장 관련 보완	10.5	10	0.5	-	-	-	-
○ 유도 및 점자블럭 보완,수리	47	1	42	-	1	3	-
○ 계단·복도·경사로 손잡이 보완	64	2	60	2	-	-	-
○ 장애인 화장실 보완 및 경사로 빗물박이 설치	242	1	-	120	120	1	-
○ 미끄럼방지시설 설치	30	-	-	30	-	-	-
○ 편의 제공품(휠체어,촉지도)구입	3	-	2	1	-	-	-
○ 기타 노후된 편의시설 교체	105	3	-	-	2	100	-
○ 수화 통역 등 인적서비스	70	-	-	-	35	35	-

- 정부중앙청사

(금액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총 계	추진계획					비고
		2005년	2006년	2007년	2008년	2009년	
총 계	43	6	2	0	17	18	
○ 점자블럭 보완, 수리	6	1	2	-	-	3	
○ 계단 경사로 손잡이 설치	2	2	-	-	-	-	- 별관 연결통로 손잡이 설치
○ 기타 노후 시설 교체 등(축지도)	5	3	-	-	2	-	- 3개소(축지도) 내용 변경
○ 수화 통역 등 인적서비스	30	-	-	-	15	15	

※ 수화통역은 2007년까지 자원봉사자 활용, 2008년부터 수화통역담당자 운용

- 정부과천청사

(금액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총 계	추진계획					비고
		2005년	2006년	2007년	2008년	2009년	
총 계	520	10	100	150	140	120	
○ 장애인 주차장 안내판 설치	10	10	-	-	-	-	
○ 유도 및 점자블럭 보완	40	-	40	-	-	-	
○ 계단 · 복도 손잡이 설치보완	60	-	60	-	-	-	
○ 장애인 화장실 보완 및 경사로 빗물막이 설치	240	-	-	120	120	-	
○ 미끄럼방지시설 설치	30	-	-	30	-	-	
○ 기타 노후된 편의시설 교체	100	-	-	-	-	100	
○ 수화 통역 등 인적서비스	40	-	-	-	20	20	

※ 수화통역 등 인적서비스 제공은 청사 방호원을 적극 활용할 예정임

- 춘천시소

(금액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총 계	추진계획					비고
		2005년	2006년	2007년	2008년	2009년	
총 계	8.5	1	2.5	3	1	1	
○ 점자블럭 보완	1	-	-	-	1	-	
○ 장애인 주차장면 확대	0.5	-	0.5	-	-	-	
○ 장애인 화장실 관련 보완	2	1	-	-	-	1	
○ 편의 제공품(휠체어,축지도)구입	3	-	2	1	-	-	
○ 출입구 경사로 손잡이 보완	2	-	-	2	-	-	

- 정부대전청사

- 관련 법률에 따라 현재 설치 완료된 장애인 편의시설 외에 2차 편의시설 계획 기간(2005년 ~ 2009년) 내에 별도의 추가 확충 계획은 없으며, 규정의 강화 시 지속적인 보완 예정

□ 문화관광부

1. 목표

장애인 등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무장애 공간을 구현하여 문화 소외계층이 다양한 문화에 접근 가능한 환경 조성

2. 대상

○ 국립의 문화·예술 시설 및 서비스

- 국립중앙극장, 국립국악원, 국립중앙박물관, 국립민속박물관, 국립현대미술관, 국립중앙도서관 등

3. 추진과제

○ 이동보조 및 안내서비스 확충·개선

- 인적 서비스 제공(수화통역, 이동보조, 안내서비스 등)
- 장애인을 위한 안내데스크 및 점자안내책자(시각장애인)와 시각경보기(청각장애인) 등 구비

○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

- 장애인전용주차구역, 장애인용 승강기시설, 장애인 전용 좌석 등

4. 세부추진계획

○ 달오름극장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편의시설 확충(2005년)

- 장애인 전용 관람석(4석), 휠체어리프트 등

- 국립국악원 내 전용승강기 확충 및 안내표지판 등 시설개선 (2007~2009년)
- 국립중앙박물관 점자안내책자 발간, 점자용·음성용안내표지판 등 (2006~2009년도)
- 국립민속박물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「디지털전자가이드(PDA)」, 「점자안내가이드」 제작·비치
- 장애인 편의시설축진시민연대 등에 의뢰해 국립현대미술관 시설 개선대책 확립(2005년)
- 국립중앙도서관 기존 편의시설 보완 및 비상시의 안전시스템 구축
- 편의시설 설치시 관련단체의 참여를 통해 적정설치 사전점검
- 공연시설접근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공연감상가능성 보장
 - 한국영화 한글자막, 화면해설 서비스지원방안 등 검토추진

□ 정보통신부

1. 목 표

- 『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』에 의거 새로 건립(신축·증축·개축) 되는 우체국사의 국전우체통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블럭을 설치

2. 대상시설

- 우체통
 - 1,000m² 이상 업무시설(4,5급국) : 주 출입문 근접로
 - 1,000m² 이하 공공근린 시설(6급국) : 주 출입문 근접로

3. 추진과제

-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국전 우체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블럭을 설치
 - 신설 및 개축우체국 국전우체통 284개소
-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체국 출입이 가장 용이한 지역에 설치

4. 세부 추진계획(연차별 소요예산 포함)

- 국전우체통 유도블럭 장치 소요예산은 연도별 우체통 구입 예산에 계상하여 추진
- 연도별 국전우체통 설치 현황 및 계획 : '09년도 까지 284개 설치
- 별정우체국의 경우 기존 별정우체국에 대해서 편의시설 설치 제도 및 별정우체국 청사 신축, 증축, 개축 시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유도

□ 노동부

1. 목표

-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환경 개선

2. 추진과제

□ 장애인고용사업장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진단조사

-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장에 대해 편의시설진단조사를 실시하여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
- 그간의 편의시설 진단조사
 - 2003년도 :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, 장애인 5인 이상의 사업장 374개사업장에 대한 편의시설 실측 및 면접조사
 - 2004년도 :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및 100인 이상 기업 158개 사업장 조사
 - 2005년도 : 장애인고용사업장 100개소 조사 예정

□ 사업장 편의시설 지원

- 진단조사 결과, 편의시설이 미비하거나 부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유·무상 지원
 - 편의시설의 설치·구입·수리비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지원,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/3 지원
 - ※ 장애인고용사업장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관련규정 개정(2005. 1. 1)
 -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융자를 통해서도 편의시설 설치를 간접 지원(장애인 1인당 3천만원, 15억원 한도)

3. 연차별 추진계획

- '05년 시설장비무상지원예산(17억)의 약 50%를 편의시설설치로 책정하여 지원
 - 사업장 출입구 문턱 낮추기, 경사로 마련, 화장실 개선 및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, 승강기 지원 등
- 장애인고용사업장 편의시설진단조사는 매년 100~150개소를 목표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추진

<연차별 편의시설 설치지원 목표>

(단위 : 개소)

구분	2005	2006	2007	2008	2009
○ 편의시설설치지원	50	60	60	70	70
○ 편의시설실태조사	100	130	130	150	150

□ 건설교통부(「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」)

○ 목표

- 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버스, 철도 등 대중교통서비스의 편의시설 확충
- 「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」 제정과 「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5개년 계획」 수립

○ 저상버스

- 2009년까지 버스 대폐차시에 저상버스 교체비용(1억원)을 버스 사업자에게 지원하여 전체버스의 13.5%정도를 저상버스로 확충하고 저상버스 구입가격 절감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 추진

< 저상버스 도입 연차별 추진계획 >

총계	'05	'06	'07	'08	'09
3,962대	162	200	1,200	1,200	1,200

※ 표준모델 개발 이후 '07년부터 해당 국고 0.5억→0.25억원 지원

○ 도시철도

- 도시철도 역사 중 신규역사는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기존 역사의 경우에는 편의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시설 개선 추진

<도시철도 역사의 편의시설 확충 연차별 추진계획>

구분	계	'04년말현재	'05년	'06년	'07년	'08년
계	3,640	2,744	243	210	120	323
(%)	(100)	(75.4)	(6.7)	(5.8)	(3.3)	(8.9)
엘리베이터	957	571	113	76	64	133
에스컬레이터	1,720	1,261	79	134	56	190
휠체어리프트	943	892	51	-	-	-
수평자동보도	20	20	-	-	-	-

○ 철도역사

- 2009년까지 대상 철도역사 141개중 28개 역사에 편의시설 설치 완료

<철도역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설치 확충 연차별 계획>

구분	총사업비		연차별 추진실적 및 계획						비고
	대상역	금액 (억원)	추진실적			추진계획			
			'03년	'04년	'05년	'06년	'07~'09년	'10년이후	
계	141	6,751	102(4)	102(3)	132(5)	200(5)	693(11)	5,521(113)	():역수
○ 전철지하역	26	1,200	102(4)	102(3)	102(3)	200(5)	693(11)		
-과천선	8	369	50(2)	80(2)	-	80(2)	159(2)		
-분당선	10	462	26(1)	22(1)	68(2)	80(2)	264(4)		
-일산선	8	369	26(1)	-	34(1)	40(1)	269(5)		
○ 전철역	64	3,376	-	-	12(1)	-	-	3,364(63)	
○ 일반역	51	2,175	-	-	18(1)	-	-	2,157(50)	

○ 공항

- 2008년 완공 목표인 인천국제공항 2단계 공사 시 '05년 하반기 부터 '08년까지 편의시설 설치

< 인천공항 2단계 건설사업중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계획 >

구분	전체	'05	'06	'07	'08	'09
안내카운터	5개소	-	-	-	5	-
화장실	58개소	-	-	-	58	-
음료대	33개소	-	-	-	33	-
엘리베이터	40개소	-	-	-	40	-
자동보도	39개소	-	-	-	39	-
시각경보기	561개소	-	-	-	561	-

○ 도로

- 도로상의 안전보행 공간을 확보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 등도 안전 보행이 가능한 도로환경 조성

< 도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충 연차별 추진계획 >

구분	전체	'05	'06	'07	'08	'09
보도설치	167km	43	110	14	-	-
보도육교설치	7개소	2	2	2	1	-

□ 해양수산부

1. 조사대상

- 연안여객터미널 : 13개소(국가 12개 및 PA 소유 1개)
- 국제여객터미널 : 8개소(부산, 인천2, 속초, 목포, 군산, 제주, 평택)

2. 편의시설 설치근거 및 기준(여객선터미널)

- 설치근거 :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」
- 대상시설
 - 의무사항 : 주 출입구 접근로, 주차구역, 대변기, 점자블럭 등
 - 권장사항 : 소변기, 세면대, 유도 및 안내설비 등

3. 조사결과

- 연안여객터미널은 대부분 대합실, 매표소 등이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주차장, 전용통로,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음
 - 부산의 경우 2층에 탑승장이 있어 리프트(1개)를 이용 중이며, 나머지 리프트 1개는 완성검사 미필로 사용 중지(교체 필요)
 - 통영은 '05년도에 도우미 콜 스위치 보강 예정
 - 완도는 건물 구조상 전용계단 설치가 곤란하며, 인천은 장애인 전용리프트 미설치(콜 스위치 이용)
 - 목포는 신축공사 시행중('07 완공)이며, 여수는 리모델링 예정('05)
- ※ 장애인에 대하여는 주차료 할인(50%) 등 시행

- 국제여객터미널의 경우 입출국장이 2층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필요함
 - 부산은 2층 대합실외부 입구에 휠체어용 경사로 설치가 필요하며, 시설이 노후되어('78년 준공) 전반적으로 시설이 부족한 실정임
 - 인천1('00 준공), 군산('04 준공) 터미널은 승강장 설치
 - 인천2, 평택, 속초터미널은 단층이며
 - 목포, 제주터미널은 연안 여객선이 1층만 이용하고 있음
- ※ 전반적으로 최근에 준공된 터미널은 편의시설이 확보되어 있으나, 준공된 지 오래된 터미널은 시설 보강이 필요

4. 해양수산부 조치계획

- 신축(목포) 또는 리모델링(여수)을 추진중인 터미널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설계에 반영(설계 완료된 경우 설계변경)
- 전반적인 보강이 필요한 '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'에 대해서는 별도의 종합계획 수립·시행(BPA 주관, 부산청 지원)
- 필요시 여객선터미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미비점 보완·확충(전 지방청)
 - ※ '05.2월중 해양수산부에서 각 지방항만청에 미비시설에 대해 보완토록 공문시달 예정
- 선박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1~2차년도 적용대상 파악 및 확정을 위한 실태조사 후 선박의 규모 및 안전운항을 감안하여 3~5차년도에 편의시설 설치 및 확대 권장

<별첨 2>

지방자치단체별 제2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

연도별 편의시설 정비계획 요약

○ 서울 연도별 정비계획

대상시설별	설치율(%) (2004실태조사결과)	2005	2006	2007	2008	2009
○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	92.0	92.5	97.5	98.5	99	100
○ 공동주택	86.2	88.5	90.5	95.5	96	100
○ 공원	87.4	93	93.5	94.5	97	100
○ 지하도, 육교	94.6	98	98.5	99.5	100	100

○ 부산 연도별 정비계획

대상시설별	'03년 설치율(%) ('03년 실태조사결과)	2005	2006	2007	2008	2009
○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	80.7	87.1	91.3	94.2	97.4	100
○ 공동주택	86.1	89.7	92.8	95.9	98.1	100
○ 공원	79.5	83.8	90.8	94.5	97.2	100
○ 지하도, 육교	70.1	83.6	88.6	93.2	97.1	100

○ 대구 연도별 정비계획

대상시설별	'03년 설치율(%) ('03년 실태조사결과)	2005	2006	2007	2008	2009
○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	72.3	80	85	90	95	100
○ 공동주택	63.2	72	79	86	93	100
○ 공원	49.2	60	70	80	90	100
○ 지하도, 육교	95.6	97	98	99	99.5	100

○ 인천 연도별 정비계획

대상시설별	'03년 설치율(%) ('03년 실태조사결과)	2005년	2006년	2007년	2008년	2009년
○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	75.1	80	85	90	95	100
○ 공동주택	62.0	67	72	75	80	85
○ 공 원	55.1	65	75	80	85	90
○ 지하도, 육교	76.4	80	85	90	95	100

○ 광주 연도별 정비계획

대상시설별	'03년 설치율(%) ('03년 실태조사결과)	2005	2006	2007	2008	2009
○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	88	90	92	93	94	95
○ 공동주택	86.7	87	88	89	90	91
○ 공 원	48.5	50	51	52	53	54
○ 지하도, 육교	76.4	77	78	79	80	81

○ 대전 연도별 정비계획

대상시설별	'03년 설치율(%) ('03년 실태조사결과)	2005	2006	2007	2008	2009
○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	94	95	96	97	98	99
○ 공동주택	63	65	67	70	75	80
○ 공 원	60	62	65	69	72	75
○ 지하도, 육교	58	60	65	70	75	80

○ 울산 연도별 정비계획

대상시설별	'03년 설치율(%) ('03년 실태조사결과)	2005	2006	2007	2008	2009
○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	95	90	92	100	100	100
○ 공동주택	100	100	100	100	100	100
○ 공 원	70	90	95	100	100	100
○ 지하도, 육교	100	100	100	100	100	100

○ 경기도 연도별 정비계획

대상시설별	'03년 설치율(%) ('03년 실태조사결과)	2005	2006	2007	2008	2009
○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	100	100	100	100	100	100
○ 공동주택	61.8	70	75	80	85	90
○ 공 원	53.7	70	78	86	94	100
○ 지하도, 육교	53.6	70	78	86	94	100

○ 강원도 연도별 정비계획

대상시설별	'03년 설치율(%) ('03년 실태조사결과)	2005	2006	2007	2008	2009
○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	68.6	85	90	95	100	100
○ 공동주택	73.6	80	85	90	95	100
○ 공 원	71	90	95	100	100	100
○ 지하도, 육교	47.6	70	80	90	95	100

○ 충청북도 연도별 정비계획

대상시설별	'03년 설치율(%) ('03년 실태조사결과)	2005	2006	2007	2008	2009
○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	70	85	90	93	95	98
○ 공동주택	62	75	85	90	95	98
○ 공 원	51	70	80	88	94	98
○ 지하도, 육교	68	80	85	90	95	98

○ 충청남도 연도별 정비계획

대상시설별	'03년 설치율(%) ('03년 실태조사결과)	2005	2006	2007	2008	2009
○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	80.8	85	90	93	97	100
○ 공동주택	78.9	83	88	92	96	100
○ 공 원	46.1	60	70	80	90	100
○ 지하도, 육교	81.6	93	95	97	99	100

○ 전라북도 연도별 정비계획

대상시설별	'03년 설치율(%) ('03년 실태조사결과)	2005	2006	2007	2008	2009
○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	82.2	87.4	93.8	96.3	98.8	100
○ 공동주택	84.8	92.4	100	100	100	100
○ 공 원	67.6	84.5	100	100	100	100
○ 지하도, 육교	57	78.6	100	100	100	100

○ 전라남도 연도별 정비계획

대상시설별	'03년 설치율(%) ('03년 실태조사결과)	2005	2006	2007	2008	2009
○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	77.1	90	100	100	100	100
○ 공동주택	76.4	85	95	100	100	100
○ 공 원	60.4	70	80	85	90	100
○ 지하도, 육교	68.9	70	80	85	90	100

○ 경상북도 연도별 정비계획

대상시설별	'03년 설치율(%) ('03년 실태조사결과)	2005	2006	2007	2008	2009
○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	74	78	83	88	94	100
○ 공동주택	68	72	78	83	90	100
○ 공 원	42	51	63	76	89	100
○ 지하도, 육교	77	85	91	96	99	100

○ 경상남도 연도별 정비계획

대상시설별	03년 설치율(%) ('03년 실태조사결과)	2005	2006	2007	2008	2009
○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	71.4	72.5	78.5	84.2	89.9	93.8
○ 공동주택	70.0	75.6	81.1	87.0	91.8	96.4
○ 공 원	65.2	75.5	81.6	86.7	91.7	94.9
○ 지하도, 육교	51.4	66.8	73.4	80.3	86.1	91.2

○ 제주도 연도별 정비계획

대상시설별	'03년 설치율(%) ('03년 실태조사결과)	2005	2006	2007	2008	2009
○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	74	78	83	88	94	100
○ 공동주택	68	72	78	83	90	100
○ 공 원	42	51	63	76	89	100
○ 지하도, 육교	77	85	91	96	99	100

<별첨 3>

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목표

(설치율은 2003.4.11.현재, 목표율은 2008년 전수조사, 단위 : 개, %)

구 분	대상시설수	실제설치 편의시설수 /설치대상편의시설수	설치율	목표율
계	227,655	665,293/877,257	75.8	89
장애인특수학교	130	1,150/1,244	92.4	100
장애인복지시설	309	3,540/3,855	91.8	100
노인복지시설	430	2,574/2,850	90.3	100
야외음악당	16	65/72	90.3	100
횡단보도	82,664	161,533/179,067	90.2	100
읍·면·동사무소 등 (1,000㎡미만의 공공건물)	9,550	68,305/76,323	89.5	100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청사 (1,000㎡이상의 공공건물)	2,083	19,768/22,132	89.3	100
여객자동차터미널, 철도·지하철역사 등	739	5,147/6,017	85.5	100
방송국	119	583/683	85.4	95
도서관(1000㎡이상)	387	2,525/2,997	84.3	100
아파트(300세대이상)	6,404	22,195/26,416	84.0	90
운동시설	1,227	3,093/3,683	84.0	90
장례식장	271	1,460/1,739	84.0	90
주차장	2,271	6,057/7,241	83.6	95
병 원	1,545	9,917/12,175	81.5	90
전신전화국	277	1,093/1,376	79.4	90
공연장	484	2,855/3,654	78.1	90
대피소	1,107	2,445/3,163	77.3	90

※ 대상시설수 및 설치대상편의시설수는 변경될 수 있음

(단위 : 개, %)

대상시설별	대상시설수	실제설치편의시설수 /설치대상편의시설수	설치율	목표율
안마시술소	287	653/860	75.9	85
소매점(근린생활시설)	17,735	39,314/52,662	74.7	90
도·소매점(판매및영업시설)	2,223	10,990/14,823	74.1	90
공중화장실	1,474	5,297/7,189	73.7	90
교회 등 종교집회장	7,277	19,814/27,157	73.0	85
전시장, 동·식물원	288	1,584/2,183	72.6	85
휴게소	237	844/1,174	71.9	85
예식장 등 집회장	975	4,487/6,291	71.3	85
금융업소 등 업무시설	11,129	50,014/72,560	68.9	80
교육원·직업훈련소 등	2,409	10,509/15,258	68.9	80
아동복지시설	15,064	42,279/61,548	68.7	80
학교(초·중·고, 대학 등)	13,087	58,355/85,647	68.1	85
일반숙박시설(호텔 등)	1,235	6,953/10,756	64.6	75
아파트상가(300세대이상)	5,079	18,748/30,056	62.4	85
연립·다세대주택	26,498	50,541/82,061	61.6	85
수련시설	377	1,660/2,758	60.2	70
공 원	4,005	8,665/14,652	59.1	70
공 장	719	2,107/3,564	59.1	70
운전학원	472	1,635/2,799	58.4	70
기숙사	805	2,247/3,862	58.2	70
여 관	3,430	10,535/18,158	58.0	65
지하도, 육교	2,835	3,757/6,552	57.3	80

※ 대상시설수 및 설치대상편의시설수는 변경될 수 있음